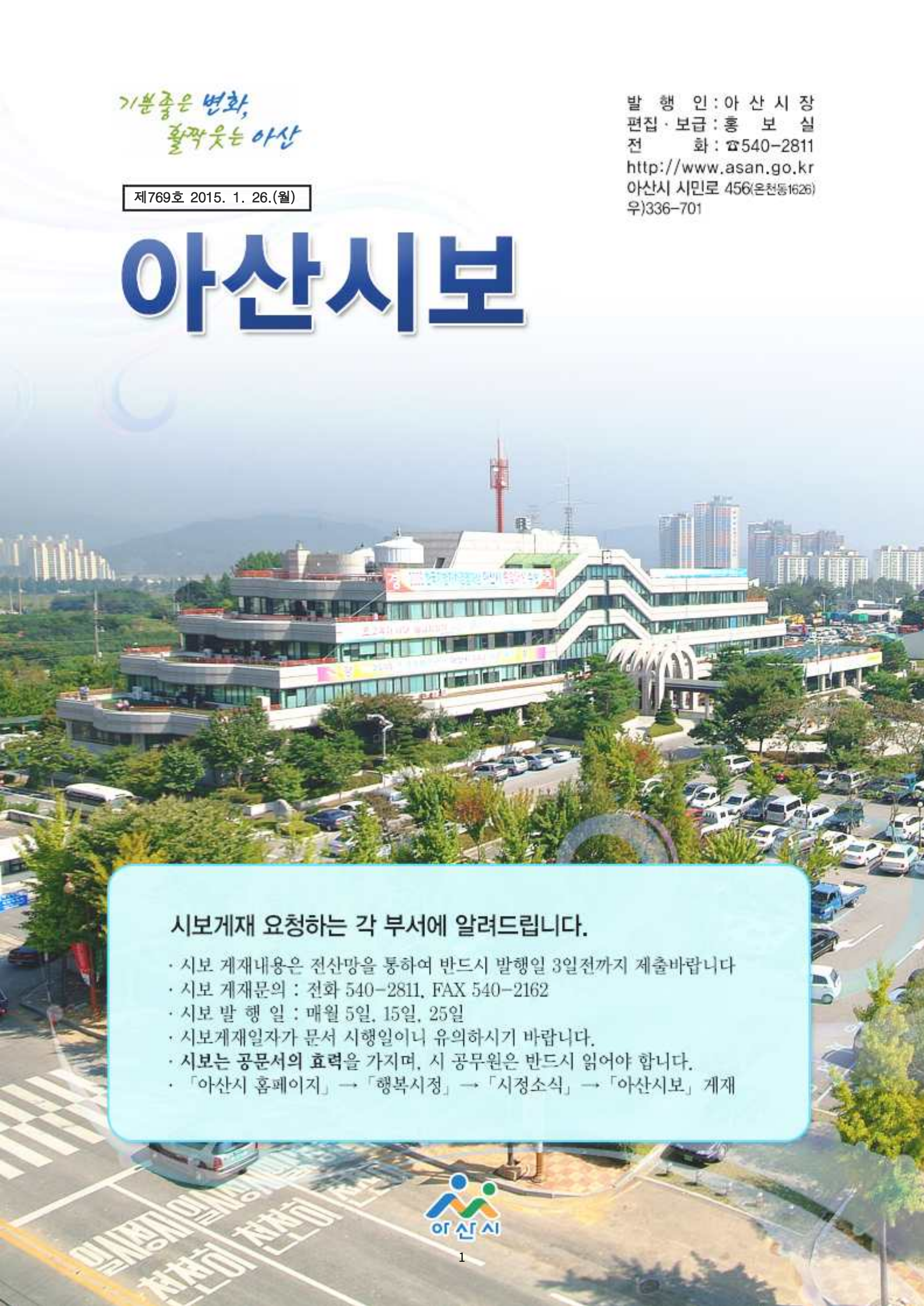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제769호 2015. 1. 26.(월)

발 행 인 : 아 산 시 장
편집 · 보급 : 홍 보 실
전 화 : ☎540-2811
http://www.asan.go.kr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1626)
우)336-701

아산시보



시보게재 요청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시보 게재내용은 전산망을 통하여 반드시 발행일 3일전까지 제출바랍니다
- 시보 게재문의 : 전화 540-2811, FAX 540-2162
- 시보 발 행 일 : 매월 5일, 15일, 25일
- 시보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아산시 홈페이지」 → 「행복시정」 → 「시정소식」 → 「아산시보」 게재

【 게 재 순 서 】

고 시

○ 제2015-20호(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 제2015-21호(도시계획시설(대학,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4

○ 제2015-22호(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3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8

○ 제2015-23호(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9

○ 제2015-27호(아산시 제2차 대중교통계획)---------- 10

공 고

○ 제2015-65호(『2015년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지원 신청 공모)---------- 11

○ 제2015-71호(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29

○ 제2015-72호(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2

○ 제2015-73호(아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 제2015-74호(2015년도 아산시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공고)---------- 42

○ 제2015-93호(도로지정 공고 [박상정])---------- 51

○ 제2015-101호(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52

○ 제2015-106호(도로지정 공고 [강환명])---------- 61

○ 제2015-113호(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봉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62

아산시 고시 제2015- 20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산17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0일

아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3	20	집산도로	341	광로 3-3	아산시 구역계	일반 도로			법면 포함
변경	중로	1	13	20	집산도로	341	광로 3-3	아산시 지구계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13	중로 1-13	○ 연장변경 – 연장 : 341m(변경없음) ○ 면적변경 – 기정 : 10,053.3㎡ – 변경 : 10,218.8㎡ (증 165.5㎡)	○ 중로1-13호선 법면 변경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

아산시 고시 제2015- 21호

도시계획시설(대학,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산17-1번지 일원에 영동대학교 제2캠퍼스조성(1단계) 및 대학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대학,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산17-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대학, 도로)사업
2) 명 칭 : 영동대학교 제2캠퍼스조성(1단계) 및 중로3-1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영동대학교 조성(1단계) A=129,585㎡
- 중로3-1호 L=788m, B=12m, A=22,14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금강학원
- 주 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310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있음)

- 기 정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5년 2월 28일
- 변 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6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변경있음)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영동대학교)편입용지조서 (변경있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기정	변경					
합 계				156,543	129,585	129,585					
1	읍봉면 동암리	115	답	496	496	496	학교법인 금강학원	영동읍 설계리 산12-1			
2	〃	114	답	109	109	109	학교법인 금강학원	영동읍 설계리 산12-1			
3	〃	산17-5	임	32,700	32,700	32,700	학교법인 금강학원	영동읍 설계리 산12-1			
4	〃	산19-1	임	9,223	9,223	9,223	학교법인 금강학원	영동읍 설계리 산12-1			
5	〃	산19	임	5,058	5,058	5,058	학교법인 금강학원	영동읍 설계리 산12-1			
6	〃	산18	임	18,149	17,222	17,899	학교법인 금강학원	영동읍 설계리 산12-1			
7	〃	14	답	979	979	979	학교법인 금강학원	영동읍 설계리 산12-1			
8	〃	산17-4	임	32,400	32,400	32,400	학교법인 금강학원	영동읍 설계리 산12-1			
9	〃	13	답	1,537	1,537	1,537	학교법인 금강학원	영동읍 설계리 산12-1			
10	〃	산17-1	임	26,338	26,338	24,584	학교법인 금강학원	영동읍 설계리 산12-1			
11	〃	산15	임	12,000	1,959	1,959	학교법인 금강학원	영동읍 설계리 산12-1			
12	〃	산14	임	17,554	1,564	2,641	학교법인 금강학원	영동읍 설계리 산12-1			

나. 도시계획시설(중로3-1호선) 편입용지조서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126,144	22,141					
	소 계			46,940	10,284					
1	음봉면 동암리	632	구	2,812	22	국(건설부)				
2	〃	534-7	도	13	13	아산시				
3	〃	632-1	구	114	114	국(건설부)				
4	〃	534	답	500	3	아산시				
5	〃	534-6	답	8	8	아산시				
6	〃	633-1	도	116	116	국(건설부)				
7	〃	534-8	도	36	4	아산시				
8	〃	633-2	도	1,846	5	국(건설부)				
9	〃	632-2	구	955	13	국(건설부)				
10	〃	64-2	답	331	176	고경자외1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7 신도림5차 e-편한세상 704	최순자	서울,관악,봉천 현대@117-1206	공유자
11	〃	65-14	임	3	3	김해김씨 참찬공파종	동암리 65-4			
12	〃	64	답	2,465	116	고경자외1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7 신도림5차 e-편한세상 704	최순자	서울,관악,봉천 현대@117-1206	공유자
13	〃	64-1	답	520	520	고경자외1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7 신도림5차 e-편한세상 704	최순자	서울,관악,봉천 현대@117-1206	공유자
14	〃	65-13	임	19	19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김해김씨 참찬공파종	음봉면 동암리 65-4	가처분
15	〃	65-6	임	135	27	김해김씨 참찬공파종	음봉면 동암리 65-4			
16	〃	65-3	임	17,341	128	학교법인 금강학원외 1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김해김씨 참찬공파종	음봉면 동암리 65-4	공유자
								정안디앤씨(주)	화성시 능동 1152-5 폴리크리닉4층	가처분
17	〃	65-12	임	565	402	재단법인심우당 문화재단	충북 영동읍 영동읍 설계리 693	김해김씨 참찬공파종	음봉면 동암리 65-4	가처분
18	〃	66	전	228	154	김해김씨 참찬공파종	동암리 65-4	아산시 천안세무소		압류
19	〃	66-1	전	89	89	김해김씨 참찬공파종	동암리 65-4			
20	〃	65-11	임	789	413	재단법인심우당 문화재단외 1인	충북 영동읍 영동읍 설계리 693	김해김씨 참찬공파종	음봉면 동암리 65-4	공유자 가처분
21	〃	65-10	임	2,475	2,475	학교법인 금강학원외 1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재단법인심우당 문화재단	충북 영동읍 영동읍 설계리 693	공유자
								김해김씨 참찬공파종	음봉면 동암리 65-4	가처분
22	〃	92-3	전	19	19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23	〃	92-2	전	348	20	김현원	동암리 524			
24	〃	65-16	임	2,188	949	주식회사 대동	동암리 65-4			
25	〃	65-8	임	8,527	1,225	주식회사 대동	동암리 65-4	김해김씨 참찬공파종	음봉면 동암리 65-4	가처분
26	〃	65-15	임	2,135	2,135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27	〃	93-2	전	983	256	학교법인 금강학원외2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김현북	음봉면음봉로 383번길 48-12	공유자
								노승영	음봉면 음봉로 401번길5	공유자
28	〃	93-6	전	177	177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29	〃	93-5	전	268	268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30	〃	93-4	임	935	415	재단법인심우당 문화재단	충북 영동읍 영동읍 설계리 69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소 계			79,204	11,857					
31	음봉면 동암리	93-1	임	26,018	278	재단법인심우당 문화재단외 2인	충북 영동읍 영동읍 설계리 693	김현북	음봉면음봉로 383번길48-12	공유자
								학교법인 급강학원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공유자
32	〃	93-3	임	241	241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33	〃	95-2	답	575	575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34	〃	95-3	답	1,616	339	김홍규	동암리 518-2			
35	〃	95-1	답	2,675	330	김홍규	동암리 518-2			
36	〃	100-1	전	195	195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37	〃	100-2	전	596	285	장영석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4-7	배방농협	배방읍공수리 60-6	근저당 지상권
38	〃	100	전	191	105	장영석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4-7	배방농협	배방읍공수리 60-6	근저당 지상권
39	〃	616-2	구	4,806	150	국(건설부)				
40	〃	616-1	구	103	103	국(건설부)				
41	〃	161	구	897	123	국(건설부)				
42	〃	104	답	29	29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43	〃	104-2	답	257	257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44	〃	104-1	답	71	71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45	〃	103-4	임	167	167	학교법인 금강학원외3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백근식	도봉구 마들로 646,101-901	공유자
								백용식	용인시 수지구성복2로 158,604-801	공유자
								(재)심우당 문화재단	충북 영동읍 영동읍 설계리 693	공유자
46	〃	103-5	임	307	169	학교법인 금강학원외3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백근식	도봉구 마들로 646,101-901	공유자
								백용식	용인시 수지구성복2로 158,604-801	공유자
								(재)심우당 문화재단	충북 영동읍 영동읍 설계리 693	공유자
47	〃	102-2	전	3,018	78	김홍규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888-42			
48	〃	102-1	답	281	196	김홍규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888-42			
49	〃	102-5	답	397	397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김창옥	대전시 중구 용두동 24-3	가등기
50	〃	102-6	답	988	220	김홍규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888-42	김창옥	대전시 중구 용두동 24-3	가등기
51	〃	102-7	전	40	40	학교법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김창옥	대전시 중구 용두동 24-3	가등기
52	〃	103-3	임	21,955	2,817	학교법인 금강학원외3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백근식	도봉구 마들로 646,101-901	공유자
								백용식	용인시 수지구성복2로 158,604-801	공유자
								(재)심우당 문화재단	충북 영동읍 영동읍 설계리 693	공유자
53	〃	103-1	임	4,454	2,067	학교법인 금강학원외3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백근식	도봉구 마들로 646,101-901	공유자
								백용식	용인시 수지구성복2로 158,604-801	공유자
								(재)심우당 문화재단	충북 영동읍 영동읍 설계리 693	공유자
54	〃	103-2	임	1,977	1,977	학교법인 금강학원외3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백근식	도봉구 마들로 646,101-901	공유자
								백용식	용인시 수지구성복2로 158,604-801	공유자
								(재)심우당 문화재단	충북 영동읍 영동읍 설계리 693	공유자
55	〃	616-2	구	4,806	435	국(건설부)				
56	〃	616-3	구	64	64	국(건설부)				
57	〃	616-4	구	2,480	149	국(건설부)				

아산시 고시 제2015- 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3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산17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산1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3호)사업
2) 명 칭 : 천안 쌍용고 ~ 배방지구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3호)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도로(중로1-13호) B=20m L=341m A=10,218.8㎡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1) 성 명 : 천안시장
2)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16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37506.7	10,218.8					
1	아산시 장재리	1843	공	366.4	8.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아산시 장재리	2035	도	5,708.3	5,70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아산시 장재리	산17	임	24,496.0	4,299.8	진은규	천안시 쌍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1-2블럭 주공아파트 206-505			
						진수민	천안시 쌍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1-2블럭 주공아파트 206-505			
						진수민	천안시 봉명동 178-8			
						진병홍	천안시 봉명동 178-8			
						진현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우성아파트 101-805			
4	아산시 장재리	산18-1	임	6,936	202.5	권영안	배방면 장재리 81			
						권홍안	천안시 원성동 481-1 초원라이프아파트 302			
						권회동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77-1			

아산시 고시 제2015- 23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아 산 시 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A4용지 1매당 150원	광학식디스크(CD) (500원×CD개수)+(30원×면수)	

아산시 고시 제2015- 27호

아산시 제2차 대중교통계획 수립 확정 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아산시 제2차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계획은 아산시청(교통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일

아 산 시 장

가. 열람기간 : 2015년 1월 00일 ~ 2월 00일까지(15일간)
나. 열람장소 : 아산시 교통행정과 (☏ 041-540-2373)
다. 계획수립 개요
  1) 계획범위 : 아산시 및 인접 시,군
  2) 목표년도 : 2018년
  3)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나) 대중교통여건 전만 및 수요예측
    다) 추진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측
    라) 노선체계 개편 및 시내버스 고급화
    마)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바)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방안
    사)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라. 기타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 (☏ 041-540-2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공고 제2015- 65호

『2015년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 사업』 공모

아산시에서는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예체능, 특기적성,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15년 지역사회 행복주말배움터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개인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서를 작성, 교육도시과로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토요프로그램) 운영 희망 공모 기관·단체·개인

2. 신청기간 : 2015. 1. 26. (월) ~ 2. 4. (수) 18:00 까지

3. 지원신청서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아산시 교육도시과 방문접수
- 제출서류(4개)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관 소개서, 관련 실적증빙자료, 기관등록증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아산시 홈페이지(http://www.asan.go.kr) 참고

4. 평가항목

- 사업지원 우선순위 평가(100점) : 교육기부 및 네트워크 구축(40점), 소외계층 지원 방법(20점), 프로그램 특이성(40점)
- 사업평가(100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기관평가(3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20점), 사업파급효과(10점)
- **프로그램별 비상관리,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5. 선 정 : 아산시 1차 평가와 충청남도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1차 아산시 선정심의 : 2015.2.13.(금) 한
- 2차 최 종 선정심의 : 2015.2.27.(금) 한

6. 신청자별 신청가능 보조금 : 1개 사업단별 최대 2천만 원 이하 지원

7. 문 의 처 : 아산시 교육도시과 학교지원팀(전화 041-540-2031~2)

붙임 1. '15년 지역사회주말행복배움터 운영사업 공모추진계획 1부
2.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3. 예산편성지침 1부

2015. 1. 19 .

아 산 시 장

- `15년 지역사회주말행복배움터 사업 -

기 본 추 진 계 획(안)

Ⅰ 2015년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진흥원 주관, 사업주체간 유기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가치 있는 주말행복배움터 사업 운영 및 전문성 강화
-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가치 및 지역사회 연계, 가족형 프로그램 강화 운영

2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道·道 교육청** : 예산지원(예산지침 시달 등) 및 사업자문 역할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기본계획 수립, 설명회, 사업선정, 성과보고회 및 시·군별 컨설팅(2회 이상) 추진
- **시 및 교육지원청** : 사업운영 및 사업단 관리·지원, 자체 컨설팅 추진 등

3 추진근거

- 충청남도평생교육 5개년 계획에 의거
  - **정책목표1.** 생애주기별 인재육성
  - **핵심과제1.**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지원

Ⅱ 2015년 사업추진 및 공모계획

1 사업비 부담 및 집행절차

- 사업비 100,000천원(시 50%, 道·道교육청 각 25%(총 사업비의 50%)
- 道교육청 부담분은 道에 전입, 道예산에 편성 집행(지자체 주도)

2 공모계획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토요프로그램) 운영 희망 공모 기관·단체·개인
- 신청기간 : 2015. 1. 26. (월) ~ 2. 4. (수) 18:00 까지
- **지원신청서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아산시 교육도시과 방문접수
- 제출서류(4개)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관 소개서, 관련 실적 증빙자료, 기관등록증

- **평가항목**

- **사업지원 우선순위 평가(100점)** : 교육기부 및 네트워크 구축(40점), 소외계층 지원 방법(20점), 프로그램 특이성(40점)
- **사업평가(100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기관평가(3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20점), 사업파급효과(10점)
- **프로그램별 비상관리,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선정 : 아산시 1차 평가와 충청남도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1차 아산시 선정심의 : 2015.2.13.(금) 한
- 2차 최 종 선정심의 : 2015.2.27.(금) 한

● 신청자별 신청가능 보조금 : 1개 사업단별 최대 2천만 원 이하 지원

※ **공모 시 유의사항**

- '15년 개인 및 영리사업자, 학습동아리는 사업장소를 '공공장소' 활용 권고
  예)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학교 등
- '16년부터 학습동아리는 단체등록 후 지원 가능

3 사업자 선정방법

✓ **형평성 및 사업 효율성을 위해 1, 2차 심사 실시**

① **1차 시·군 심사(3명 이상) 및 평가추진 :** 시, 교육지원청,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선정심사단을 구성, 평가 및 우선순위 확정

- 공모사업 신청 기관·단체 전체에 대하여 평가 우선순위 결정
- 공모사업 신청단체의 예산집행계획이 예산집행지침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 검토의견서에 내용 기재

➜ 단, 2. 13. (금)까지 1차 선정기관 및 평가순위 공문 송부

② **2차 道 심사 및 선정 :** 道, 道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후, 심의선정

- 사업계획과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추진방향 반영여부 및 지역사회 연계 정도, 참여학생 수, 시·군 여건(재정) 등 종합고려

→ 사업단별 불합리한 사업비 편성 등 조정

→ 시·군별 상·하한 금액(80백만원~120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적합한 수준의 사업단이 없을 경우 하한금액(80백만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음

참고1.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우선순위	❶ 교육기부(인적·물적)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연계 정도 - **교육기부 정도 평가** 1차년도 신청 기관 : 교육기부 참여 인원 및 방법 2차년도 신청 기관 : 교육기부 실적 평가 - **사업운영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여부 및 계획** 1차년도 신청 기관 :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기관 수 2차년도 신청 기관 : 협력네트워크 여부 및 참여기관 수 ❷ **소외계층 지원 방법** : 저소득, 다문화, 조손가정, 장애인, 학습 기관과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교육 지원 프로그램 - **학습대상, 운영지역, 재능기부, 동아리 구성 등** ❸ **프로그램의 특이성** - 지역의 특성(문화, 예술, 현장체험 등)을 반영한 사업 (지역 특성 반영 이유 설명 필요) - 학생선호 또는 희망프로그램 반영(**조사방법 및 근거 제시**) - 학생 및 가족 대상의 사회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단, 주 대상은 학생이어야 함. 성인(부모)만 지원 불가)**
기 타	❶ 1개 사업단 최대 20백 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 ※ 시·군별 상황 고려 적정 수준 책정 가능 ❷ 사업 관리 지침에 맞는 사업 설계(사업비 구성, 프로그램 운영 등) ❸ 공모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지침 여부

4 일정별 추진계획

<사업의 추진일정>

공모사업 계획수립 시달	→	공모계획홍보 및 신청서 접수, 심사추천	→	사업자 최종 선정	→	사업추진 및 컨 설 팅 (시·군, 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진흥원 ' 14. 1. 9(금)		■ 시 · 군 ' 15.2.13(금)까지		■ 평생교육진흥원 ' 15.2.27(금)까지		■ 사업추진(3월~12월) ■ 컨설팅 및 평가 (5월~6월, 11월)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 9(금)	■ 14년 지역사회행복배움터 사업계획 시행 ※ 시·군별 공모기간은 자유롭게 하되, 2.13(금)까지 결과는 진흥원으로 통보	평생교육진흥원
1.22(목)	■ 사업설명회 개최 - 道·道교육청·시군·전문가(평가단) 대상 설명회 개최 ※ 사업단 대상 설명회는 따로 없음	평생교육진흥원
2.13(금)까지	■ 시·군별 심사 결과 및 평가순위 제출 - 시·군, 교육지원청, 전문가 등 포함한 심사단 운영 - 사업취지 및 평가에 따른 순위 제출	15개 시·군
2.27(금)까지	■ 시·군 심사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자 최종 선정 - 선정결과 道·道교육청, 시·군 송부	평생교육진흥원
3.6(금)까지	■ 선정 결과를 반영, 시·군별 예산지원	道
3.11(수)	■ 선정 사업단 오리엔테이션 - 사업운영 및 예산 관리 등 교육	道 평생교육진흥원 (유관기관단체 등)
3월 ~ 12월	■ 사업 운영	15개 시·군 (공모사업자)
5월~6월	■ 상반기 현장컨설팅 운영 - 1차 통합컨설팅(15회) : 시·군별 선정단체별 컨설팅 추진 - 2차 자체운영점검 현장컨설팅 · 시·군, 교육지원청, 전문가 포함 컨설팅단 구성 · 1차 컨설팅 결과 반영 및 운영사항 점검·지도	道 평생교육진흥원 15개 시·군
7월 중	■ 상반기 컨설팅 결과 공유 및 하반기 추진사항 반영 ➜ 시·군별 평가결과 공유 〈자체 통합 간담회〉 추진	15개 시·군
11월~12월	■ 하반기 현장컨설팅 운영 - 하반기 개설 프로그램 대상 ■ ’15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평가 추진 ➜ 우수기관 선발 및 표창계획 수립 등	평생교육진흥원 15개 시·군
12월 중	■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사업 성과보고회	道·道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15개 시·군 사업참여기관 및 단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4> 사업신청서 서식

' 15년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사업 신청서

<table>
<tr><td>기관(단체)명</td><td colspan="5"></td></tr>
<tr><td>사 업 명</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총 사 업 비</td><td colspan="2" rowspan="2">천원</td><td>보조금</td><td colspan="2">천원(%)</td></tr>
<tr><td>자부담</td><td colspan="2">천원(%)</td></tr>
<tr><td rowspan="2">단 체 성 격
구 분</td><td colspan="2">①비영리법인 ( )
②영리법인 ( )</td><td colspan="2">③비영리민간단체( )
④영리단체 ( )</td><td>⑤사회적기업 ( )
⑥협동조합 ( )</td></tr>
<tr><td colspan="2">⑦시·군 ( )
⑧공공기관 ( )</td><td colspan="2">⑨개인( )
⑩학습동아리 ( )</td><td>⑪기타 ( )</td></tr>
<tr><td>기관(단체)
등록사항</td><td colspan="5">○ 등록부처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이 칸은 공란</td></tr>
<tr><td rowspan="5">기관
정보</td><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대표자</td><td>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팩스번호</td><td></td><td>전자우편</td><td></td></tr>
<tr><td rowspan="2">실무자</td><td>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직 위</td><td></td><td>전자우편</td><td></td></tr>
</table>

위와 같이 2015년도 지역사회 주말 행복 배움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 기관(단체, 개인)명 : 직인 (사인)

첨부서류 1.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사업 계획서 1부
2. 기관(단체, 개인)소개서 각 1부

증빙서류 1. 관련 실적증빙자료 2. 기관등록증

○ ○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15년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사업계획서

【사업 요약서】

<table>
<tr><td>기 관 명</td><td colspan="4"></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4"></td></tr>
<tr><td>사 업 명</td><td colspan="4"></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4"></td></tr>
<tr><td>주요대상(명)</td><td colspan="4"></td></tr>
<tr><td>교육장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예산 현황</td><td>구분</td><td>보조금(천원)</td><td>자부담(천원)</td><td>계</td></tr>
<tr><td>사업비</td><td></td><td></td><td></td></tr>
<tr><td>비율</td><td></td><td></td><td>100%</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4">▪
▪
▪</td></tr>
<tr><td>사업 주요내용</td><td colspan="4">▪
▪</td></tr>
<tr><td>교육기부 및
네트워크 구축계획</td><td colspan="4">▪
▪</td></tr>
<tr><td>소외계층
지원방법</td><td colspan="4">▪
▪</td></tr>
<tr><td>프로그램 특이성</td><td colspan="4">▪
▪</td></tr>
<tr><td>사업효과</td><td colspan="4">▪
▪</td></tr>
<tr><td rowspan="5">성과목표</td><td colspan="2">자체성과 지표명(단위)</td><td>목표값</td><td>산출식</td></tr>
<tr><td colspan="2">① 총 학습자 수(명)</td><td></td><td></td></tr>
<tr><td colspan="2">② 교육 수료생 수(명), 출석률(%)</td><td></td><td></td></tr>
<tr><td colspan="2">③ 교육 만족도(%)</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able>

1. 사업의 목표 및 필요성

1.1 신청사업의 목표

1.2 신청사업의 필요성

1.3 지역특성 반영사항 및 강점

2.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 개인) 소개서

기 관 명	
기관 조직도	
대 표 자	
주 소	
설 립 목 적	
특징 및 강점	
단 체 연 혁	
홈페이지 주소	
연간운영사업비	천원(보조 , 자담)

3. 추진실적

3.1 최근 3년간 주 5일수업제 관련 토요프로그램(유사사업 포함) 사업실적

연도	사업 명	사업 개요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명)	예산액 (천원)
2012						
2013						
2014						

3.2 교육기부 실적 : 총 회

○ 기부 횟수 : *난타반 강사 재능기부, 장소제공 기부(동일항목은 1회로 간주)*

○ 기부방법 : *기부 주요내용(기부혜택 및 제공 등)*

- 인적 : *기부자, 기부인원, 혜택인원 등*
- 물적 : *기부 방법 및 금액 환산시 예상금액 등*

3.3 협력네트워크 구축 실적

○ 구축방법 및 운영 :

○ 참여기관 수 :

4.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운영 추진 세부 계획

4.1 교육목표

○

○

4.2 학습자 모집 및 홍보, 관리전략

○ 모집대상 :

○ 모집인원 : 총 명

○ 모집·홍보방법

-

○ 학습자 관리방법(출석독려 및 중도탈락 방지, 학습이력 관리 등)

-

4.3 교육기부(인적·물적) 계획

○ 인적 :

○ 물적 :

4.4.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계획

○ 협력방안 및 회의 개최

○ 참여기관 수 :

<상반기운영계획 : 8월까지>

4.5 교육과정 및 시간표

프로그램 명					
차시	요일	시간	강의내용	강사명	교수방법

4.5.1 강사확보 계획

번호	프로그램 명	성명	최종학력	경력 및 자격증	소속기관	비고

<하반기운영계획 : 9월부터~12월까지>

4.6 교육과정 및 시간표

프로그램 명					
차시	요일	시간	강의내용	강사명	교수방법

4.6.1 강사확보 계획

번호	프로그램 명	성명	최종학력	경력 및 자격증	소속기관	비고

5 교재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5. 사업비 집행계획

5.1 상·하반기 프로그램별 총 사업비

프로그램명	계(천원)		상반기		하반기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계						

5.2 사업비 세부집행 계획

지출항목		총사업비			산 출 내 역	비고
항목	비목	계 (A+B)	보조금 신청액 (A)	기관부담 (대응투자) (B)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총괄예산표 ※ 항목별 예산 집행 계획, 항목은 붙임4 예산편성지침 참고

※ 프로그램이 1개 이상일 시, 서식 복사 후 작성

□ 프로그램별 세부예산 (※사업비 편성지침 참고)

① 프로그램 명 :

지출항목		총사업비			산 출 내 역	비고
항목	비목	계 (A+B)	보조금 신청액 (A)	기관부담 (대응투자) (B)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6. 추진일정

(*모집계획, 강의기간. 평가 등 교육과정 및 시간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운영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

7. 자체 성과평가 계획

자율 성과지표	성과 평가 계획
	▪ 추진계획 ▪ 방 법

목표값	산출식

(*산출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

8. 기대효과

〈첨부 2〉

기관·단체 개인 소개서

기관·단체 개인명		등록(주민)번호	
주 소		대표자 성함 (연락처)	
소 개 내 용	※ 기관, 단체, 개인의 토요프로그램 운영 공모신청 동기, 경험, 지역인적자원연계, 교육기부(자체 및 유도), 추진의지 등을 포함하여 1매 정도로 요약정리		

〈붙임 5〉 예산편성지침

① 기본지침

■ 민간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 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 교육기부 항목은 실질적 예산수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제출하고, 자부담으로 넣지 말 것
-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은 별도의 통장으로 사용할 것

※ 기관 통장이 1개 이상 개설 불가(전산 등)할 경우 시·군 담당부서 협의 필요

■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비용항목 구분**

연번	항 목	비 목	책정비율
1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5% 이내
2	**인건비**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회의수당) 등	-
3	**운영비**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등	
4	**실습비**	교재비, 문구비, 재료비, 체험 및 행사진행비 등 기타	-
5	**활동비**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10% 이내
6	**사후관리비**	프로그램 이후 동아리 구성 및 재능기부 등을 위한 비용	5% 이내

② 예산별 지침

■ **강사료** : 강사료는 붙임【참고 1, 2】외래강사료 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편성 집행함

※ 시·군 및 시·군 평생학습관련 조례에 근거한 강사료 기준 제시, 없을 경우 「충청남도

강사료 지급기준표」에 의거 편성

■ 인건비 :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대한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책정 가능

※ 단, 인건비 지급과 중복하여 기관임금 및 시간외 수당, 출장비 등 이중 수급 시 회수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회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정기총회, 운영위원회 수당은 자담으로 집행)**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2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원

■ **원고료**

- 지급대상 :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 5,000원으로 하며, 원고 매수별 글자수를 감안하여 20% 가감 지급가능
- 기존교재의 일부 수정 · 보안 · 삽입은 신규 작성된 원고에 한해 지급
  -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6매

■ **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을 구비

  (일비·식비 각 20천원/1일당, 교통비,숙박비(최대4만원)/1인당/실비)

  ※ 자가 및 단체 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 가능
- 학습자 대상 (프로그램 참여) 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일 경우 : 교통실비 지원(단가×프로그램 참여 횟수), 교통카드로만 지원 가능

  · 차량임대의 경우 : 총 사업비의 10% 이내 책정 가능

  ※ 상시 프로그램일 경우 해당, 체험형 프로그램일 경우 예외 적용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실비(1인 1박 기준 최대40,000원)를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 토·일요일, 공휴일 등 주말 **숙박 기준단가의 20% 초과분 인정**

■ **식비 및 다과비**

- 프로그램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학생 식비 및 다과비 집행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7,000원 이하(식비)/ 3,000원 이하(다과비)** 단가기준 적용 지출

【참고 1】

강사료 지급 기준표

(예시:충청남도지방공무원외래강사운영수당지급규정)

(단위 : 천원)

구분 (등급)	대 상	강사료 (기본1시간/추가)	보상금
특별 지급	1. 등급에 불구하고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00/1시간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특별 강사	1.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대학교총장(급) 3.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4. 전·현직 국회의원 5. 정부투자기관의 장 6. 인간문화재 7. 전·현직 대사 8.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대기업 총수 9.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340/230	〃
Ⅰ급	1.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2. 전·현직 대학 부총장, 대학원장 3. 전·현직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4. 컨설턴트(대표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기업·공공기관·연구소의 임원 이상 6.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7. 체육, 기능분야 등 전·현직 국가대표와 기타활동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 8.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9.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200/120	〃
Ⅱ급	1. 전·현직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의 전·현직교수(조교수 이상) 3. 초·중·고의 전·현직 교장·교감 4.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5. 일반 컨설턴트, 기초의회의원 6. 연구기관의 석사학위 이상 연구원 7.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 8.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140/80	〃
Ⅲ급	1.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어학강사, 체육·기능·취미 실기 지도강사 3. 특별강사 및 Ⅰ,Ⅱ급 이외의 강사	90/60	〃
보조 강사	1. 실기, 실습, 실연 등의 보조강사	50/30	〃

【참고 2】

강사료 지급 기준표(예시:인천시)

구분	대 상		금액 (단위 : 원)	
특별강사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장·차관, 총·학장)		기본	150,000
			초과	70,000
일반강사	특별강사 이외의 자 (교수, 4급상당 공무원에 준하는 자)		기본	100,000
			초과	50,000
기타강사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기본	70,000
			초과	30,000
기타강사2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일반적인 평생교육관련기관에 출강하는 강사		기본	50,000
			초과	20,000
기타강사3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 강사		기본	30,000
			초과	20,000
실습강사 (보조강사)	강좌 운영에 필요한 실기 및 실습을 보조하는 강사		기본	30,000
			초과	10,000
다수인강사	2인	여러 사람이 강의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강좌의 강사	180,000	
	3-5인		320,000	
	6-10인		500,000	
	11인 이상		700,000	
인원가산 강사료비율	80~119명 : 20% 가산, 120~159명 : 40% 가산 160~199명 : 60% 가산, 200명이상 :100% 가산			

아산시 공고 제2015- 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 우리시 온천동 일원에 온천천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및 일반주민에게 보입니다.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남 아산시 온천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사업

2) 명 칭 :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3-21호 : B=6.2m, L=382m
- 소로 3-22호 : B=6.2m, L=383m

2) 도시계획시설(하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결정	온천천	지방 하천	대로 3-촉1	곡교천	대로1-1	1,296	15~70	17,893	1985.12.27	-
시행	온천천	지방 하천	대로 3-촉1	곡교천	대로1-1	512	15~70	7,996		1. -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1) 성 명 : 아산시장

2) 주 소 :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있음)

- 기정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4.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변경없음)

사. 열람기간 : 2015. 1. 20. ~ 2014. 2. 9.(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종류
합 계				96,464.7	16,981.7						
1	온천동	1894	도	10,163.0	172.0	-	아산시		-		
2	〃	1890	도	4,231.0	2,350.0	-	아산시		-		
3	〃	1373-5	대	89.4	89.4	-	아산시		-		
4	〃	1373-4	대	286.7	286.7	-	아산시		-		
5	〃	1373-3	대	451.5	451.5	-	아산시		-		
6	〃	1374-1	대	124.3	124.3	-	아산시		-		
7	〃	1892	도	5,730.0	7.0	-	아산시		-		
8	〃	1901	도	22,100.0	74.0	-	아산시		-		
9	〃	1896	도	4,082.0	2,371.0	-	아산시		-		
10	〃	1909	구	6,753.0	6,701.0	-	아산시		-		
11	〃	1898	도	4,918.0	56.0	-	아산시		-		
12	〃	1480	대	145.0	145.0	-	아산시		-		
13	온천동	1481	대	377.0	377.0	-	아산시		-		
14	〃	1482	대	430.0	430.0	-	아산시		-		
15	〃	1479	대	936.0	936.0	-	아산시		-		
16	〃	1483	대	212.	212.0	-	아산시		-		
17	〃	1484	대	193.0	193.0	-	아산시		-		
18	〃	1485	대	355.0	355.0	-	아산시		-		
19	〃	1478	대	425.0	126.0	-	아산시		-		
20	〃	1478-1	도	102.0	7.0	-	아산시		-		
21	〃	1450-3	대	13.9	13.9	-	아산시		-		
22	〃	1451-1	대	6.5	6.5	-	아산시		-		
23	〃	1452-1	대	26.6	26.6	-	아산시		-		
24	〃	1278	도	237.0	3.0	-	아산시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종류
25	〃	1009-2	전	31.0	6.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43 20층	국제신탁주식회사		-		
26	〃	1009	전	828.0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43 20층	국제신탁주식회사		-		
27	〃	1463-1	대	7.0	7.0	송악면 거산리 279-5	이현숙	25/100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221-1 한국폴리텍 비아이센터 205호	주식회사 두현이엔씨	50/100	-		
						천안시 두정동 526-1 극동늘푸른아파트 108-902	배정혜	25/100	-		
28	〃	1453-1	대	27.8	27.8	-	아산시		-		
29	〃	1275	도	531.0	29.0	-	아산시		-		
30	〃	1065	답	1,295.0	29.0	-	아산시		-		
31	〃	1064	답	695.0	74.0	-	아산시		-		
32	〃	844	천	30,662.0	1,292.0	-	국(농림부)		-		

아산시 공고 제2015- 72호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법제처와 우리시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 자율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정의) 규정을 **항에서 호로 변경**(안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평생학습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5. 1. 15. ~ 2. 4(공고일로부터 20일간)

나. 의견 제출방법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336-050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92(용화동)아산시 평생학습관
2) 전화 : 041-537-3372(팩스 041-537-3910)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아산시 공고 제2015- 73호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법제처와 우리시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 자율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조항 삭제

(안 제3조제3항) - 동 계획의 수립은 도지사 임무임

나. 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조항 삭제(안 제6조)

- **시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

다.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중 **『협의·조정하고」** 문구 삭제(제8조)

-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가 제8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평생학습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5. 1. 15. ~ 2. 4(공고일로부터 20일간)

나. 의견 제출방법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336-050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92(용화동)아산시 평생학습관
2) 전화 : 041-537-3372(팩스 041-537-3910)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사항을 협의·조정하고”를 “사항에 관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생교육 진흥) ①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조(평생교육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현행과 같음)
제6조(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5. (생략)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아산시 공고 제2015- 74호

2015년도 아산시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공고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아산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아 산 시 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 설립한지 2년 이상(2012. 12. 31이전)된 단체
- 최근 2년 이상 여성과 관련된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아산시에 소재한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등

※ 단,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친목단체, 조합, 직능단체 등은 제외

2. 지원사업

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의식제고

- 여성의 역량개발 강화 프로그램
- 여성자원봉사자 지원 프로그램
- 여성의 유권자 의식제고 프로그램
- 가정·직장·사회에서 양성평등 의식확산 사업

② 여성의 경제활동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

- 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가정과 경제활동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여성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③ 여성 권익증진 사업

- 성매매방지, 성·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사업
- 학생, 군인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양성평등 의식확산 사업
- 폭력행위자 및 피해자 교정치료·회복프로그램

④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지원과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사업

- 한부모·다문화·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특성을 고려한 지원프로그램
- 부부·고부·예비신부교실, 아버지학교 프로그램
- 가족자원봉사단, 아버지 육아참여 활성화사업 등 가족문화 조성사업

⑤ 기타 여성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제외 대상 및 사업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중복 지원 사업
  - 단, 시장이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 가능
- 단순 집합교육 및 세미나 사업, 일회성 행사 위주사업
-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취미·교양강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 사업내용이 성격이 다른 여러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져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자체인력 및 조직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력 사용으로 기금 낭비하는 사업
- 기념품, 시상금 등 선심성경비와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 등 단체의 자본 형성적·경상적 경비 제외

3. 총지원액 : 25,000천원

○ 지원 신청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지원 (2~5개 사업 지원예정)

※ 최종지원 금액은 심사를 통해 신청금액 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원칙 : 단체별 1개 사업만 지원, **사업비 자부담 10%이상 의무부담**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 26.~ 2. 2.까지(6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 접 수 처 :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041-540-2342)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2부(서식1)
- 사업계획서 2부(서식2)
- 단체(법인) 현황 2부(서식3)
- 최근2년간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사업 추진실적 2부
-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사본 1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 법인 지부의 신청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제출서류 양식은 아산시 홈페이지(www.asan.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정관(회칙)등 증빙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공모 신청시 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지원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방법 : 아산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확정된 사업이나 사업계획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는 심사제외

○ 선정기준 :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사업수행 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통보 : 2015. 2월중(개별통보 및 도 홈페이지에 게시)

6. 추진기간 : 2015. 3 ～11. 30까지

7.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사업시기에 따라 송금 지급

○ 정　　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및 2015. 11. 30일 한

※ 제출서류 :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8. 기타 유의사항

○ 자부담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10%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에 부적합한 단체(법인)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정지 또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물품구입이나 회의비, 매식비, 인건비 등 행사·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은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041-540-2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단 체 명</td><td rowspan="2" colspan="2"></td><td>대 표 자</td><td></td></tr>
<tr><td>실 무 자</td><td>직위 :
성명 :</td></tr>
<tr><td rowspan="5">소 재 지</td><td rowspan="5" colspan="2">(우편번호 :)</td><td>전화번호</td><td></td></tr>
<tr><td>핸 드 폰</td><td></td></tr>
<tr><td>F A X</td><td></td></tr>
<tr><td>E-mail</td><td></td></tr>
<tr><td>지원대상
사 업</td><td colspan="4"></td></tr>
<tr><td>사 업 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단위:천원)</td><td>계</td><td>보조금신청액</td><td>자체부담액
(총사업비의 10%이상)</td><td>기 타</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4">2015년 월 일 ~ 2015년 월 일</td></tr>
<tr><td>세부사업
계 획 서</td><td colspan="4">따로 붙임</td></tr>
</table>

위와 같이 2015년도 아산시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비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사본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 지부의 신청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추가) 5. 최근 2년간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사업 추진실적
※ 증빙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서식 2］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세부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구체적)

○ 일시 또는 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방　　법 : (구체적으로)
※ 2015년 11월 30일까지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완료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반드시 제출)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주 요 내 용	세 부 추 진 내 용

5.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내역	총 사 업 비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강 사 료 등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6. 기대효과

○

[서식 3]

법 인(단 체) 현 황

□ 법인(단체)명 :

<table>
<tr><td>소 재 지</td><td colspan="4">아산시 (우편번호)</td></tr>
<tr><td rowspan="2">연 락 처</td><td>전화번호</td><td></td><td>E-mail</td><td></td></tr>
<tr><td>팩 스</td><td></td><td>홈페이지</td><td></td></tr>
<tr><td>설 립 일
(설립근거)</td><td colspan="2">년 월 일
(예 : 여성가족부장관)</td><td>설립형태</td><td>사단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td></tr>
<tr><td>설립목적</td><td colspan="4"></td></tr>
<tr><td>연 혁</td><td colspan="2">(예) 1982. 4. 1 창립
1983. 2. 10 법인설립허가 등</td><td>최근주요 추진사업 내 용</td><td>(예) 2013.11.5 : 성폭력예방 교육 등</td></tr>
<tr><td rowspan="2">대표자 및 주요임직원</td><td>직 책</td><td>성 명</td><td>생년월일</td><td>주요경력</td><td>임 기</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조 직 및 구 성 원</td><td>조 직</td><td>상근직원 수</td><td colspan="2">회원수(단체 수)</td><td>비 고</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전년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여부</td><td>지원기관 및 부서명</td><td colspan="2">사 업 명</td><td>지원액(천원)</td></tr>
<tr><td></td><td colspan="2"></td><td></td></tr>
</table>

[서식 4]

최근 2년간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지원처
			총계	보조금	자부담	

※ 지원처는 국가(정부부처명)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 명칭 기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아산시 공고 제2015- 93호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5. 01. 20.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 1 필 지	편입면적 (㎡)	소 유 자
배방읍 공수리 461-2	5	박상정
합 계	5	

○ 도로길이 : 약 5m

○ 도로너비 : 약 1m

□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건축과 비치

아산시 공고 제2015- 101호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공무원 파견규정을 신설하며, 위원 연임 규정과 회장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제명 및 조문내용 중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를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푸른아산21”을 “아산의제21”로 변경함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함

○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 인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원의 위촉에 대한 규정 중 2회 연임에 한함을 삭제하여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협의회 공동회장을 2인으로 구성하고 대표회장 1인을 선출토록 변경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환경보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간 : 2015. 1. 21. ~ 2. 10.(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의견 제출방법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336-701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1626)

2) 전화 : 041-540-2537(팩스 041-540-232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립된 푸른아산21”을 “수립된 아산의제21”로 하고,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를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푸른아산21”을 “아산의제21”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의제21”을 “아산의제21”로 하고 “협의회”를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푸른아산21”을 “아산의제2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라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푸른아산21”를 각각 “아산의제21”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 사회”를 “경제, 문화, 교육”으로 하고, “환경전문가”를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를 “2년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공동회장 2인을 두며 그 중 1인을 대표회장으로 하고”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중 “협의회장”을 각각“대표회장”이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제2호 중 “푸른아산21”을 “아산의제21”로 한다.

제18조 중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을 “아산시 지속가능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추진사업”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아산시 환경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아산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수립된 아산의제21----------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제3조(정의) (생 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푸른아산21”이라 함은 시민·기업·전문가·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행정기관이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	1. “아산의제21”----------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 ---------- ---- 아산의제21---------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장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푸른아산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 **아산의제21**----------
② 주민과 기업은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 **협의회**----------
제6조(기능) (생 략)	제6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푸른아산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1. **"아산의제21"**----------
2. **"푸른아산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2. **"아산의제21"**----------
3. **"푸른아산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아산의제21"**----------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생 략)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아산시의 **경제, 사회,** 환경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환경전문가**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의 전문가** ----------
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2년으로 하며** ----------
④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한다.	④ ------ **공동회장 2인 두며 그 중 1인을 대표회장으로 하고,**----------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대표회장**----------

현 행	개 정 안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 **대표회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대표회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의 지원) (생 략)	제16조(경비의 지원)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푸른아산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아산의제21**----------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 **아산시 지속가능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진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산시 공고 제2015- 106호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5. 01. 22.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 1 필 지	편입면적 (㎡)	소 유 자
배방읍 신흥리 230-1	5	강환명
합 계	5	

○ 도로길이 : 약 4.3m

○ 도로너비 : 약 1.2m

□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건축과 비치

아산시 공고 제2015- 113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봉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49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신봉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아 산 시 장

1. **건 명**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봉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 **변경목적 및 사유**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3. **주요내용**
 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496번지 일원
 나.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다.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구 역 명	구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봉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496 일원	72,702	감)626	72,076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라. 열람기간 : 2015. 1. 26. ~ 2015. 2. 9.
 마. 열람장소 :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 영인면사무소(☎041-537-3665)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및 영인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4. 의견제출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민열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 도시계획과 또는 영인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